

문서번호	주차관리과-58 35
결재일자	2016.3.2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★주무관	주차관리팀장	주차관리과장	건설안전교통국장
김종현	서성한	정찬모	03/25 김희동
협 조	민원여권과장	김귀철	
	정보화지원과장	양선희	보건위생과장 최경희
	자치행정과장	정주영	교통행정과장 서종로

- 2016. 어린이보호구역 내 -
불법주·정차 단속용 CCTV 운영 계획

2016.03.25.

강 북 구

- 2016. 어린이보호구역 내 -

불법주·정차 단속용 CCTV 운영 계획

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미 설치하여 단속중인 어린이보호구역과 2016년 CCTV 추가 설치 이관된 지역에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, 불법주·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함.

1 근거

-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
- 도로교통법 제4조의2 및 제12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 -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
- 2016년 스쿨존 내 CCTV 설치계획 및 이관(교통행정과)

2 신규 CCTV 주·정차 단속 개요

- 설치이관 : 총1개(1개 초등학교 1개소)
 - ※ 기존 설치 운영 : 32개교(초등학교 및 보육시설) 45개소(단속 중)
- 추진일정
 - 2016. 01. 18 :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주·정차 단속용 CCTV 인수
 - 2016. 02. 01 ~ 03. 31 : 불법 주·정차 단속안내 및 홍보
 - 2016. 04. 01 ~ 계속 : 불법 주·정차 단속실시

설치장소 : 총1개(1개 초등학교 1개소)

연 번	학 교	설 치 대 수	설 치 지 점	비 고
1	화계초등학교	1	솔매로50가길 25	

단 속 방 법

- 2016년 1월 추가설치 이관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 불법주·정차단속은 주민홍보를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단속 실시
 - ※ 사전 주차단속 안내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.
-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지역은 계속 불법 주·정차 단속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**평일 08:00 ~ 20:00, 토요일 08:00 ~ 14:00**까지 단속 실시
- 단속시 과태료 <승용차 : 8만원, 승합차 : 9만원>
- 주·정차 시간을 **30분**까지 허용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민원 해소
- 효율적인 불법주·정차단속을 위하여 단속원에 의한 병행 단속 실시

3 단속예고 및 홍보사항

- 어린이보호구역 CCTV 불법 주·정차단속 홍보문 전달
-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현수막 게첨 홍보
- 강북구 소식지 게재

4 행정사항

-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지역에 LED전광판 설치 및 노면표시 기 완료(교통행정과)
-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 홍보 : 자치행정과(해당 동 주민센터), 민원여권과, 강북구보건소(보건위생과)
-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및 자가통신망 사용 협조(정보화지원과)

5 기대효과

- 인력단속의 한계 보완
 - 인력단속 후 재주차 행위 방지
 - 근무시간이외 시간대 주차단속
-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
 - 불법주·정차 지역 민원에 대한 사전적 대처